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30
------	-----

2023.03.0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월 12일, 박성연 의원(찬성자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3.3.)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성연 의원)

1.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3.29.)으로 결혼이민자를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됨.

2.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를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 계층에 추가함(안 제2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의 소비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이 개정(2016.3.29.)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됨.

나.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¹⁾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9,501 (27,473)	160,653 (27,491)	166,882 (27,561)	173,882 (28,100)	173,756 (27,883)	166,771 (27,327)
남성	28,728 (7,264)	30,745 (7,391)	32,858 (7,414)	34,628 (7,527)	35,679 (7,752)	31,752 (7,719)
여성	130,773 (20,209)	129,908 (20,172)	134,024 (20,147)	139,254 (20,528)	138,077 (20,131)	135,019 (19,608)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함.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배송, 환불 처리 등에 대한 어려움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2016.3.29.).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역량강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 교육 관련 사업은 아직 실시된 바 없음.
-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소비자안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소비 활동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소비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3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12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태수, 박강산, 박영한,
박칠성,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3.29.)으로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혼이민자를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시는 어린이·노약자 및 <u>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u>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 ----- <u>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u> ---

문서번호

2022101400000018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성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0.10.14.

회신일 : 2020.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조항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 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조항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 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여 명시한 사안으로 취약계층 소지자 보호를 위한 지원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는 어려움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확대에 의한 보조금 지원액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결혼이민자 지원범위와 사업 수행방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 지므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